[별지 제55호서식의(가)] (규칙 제102조제4항 관련) <개정 2019. 5. 30.>

개표참관인신고서

1. 정당명 또는 후보자성명
2. 참관인

성 명	생년월일	성별	주 소	전화번호	직 업	비 고

위와 같이 개표참관인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- ○ ○ 당 [인]
- 대 표 자 ○ ○ ○ (인)
- 후 보 자 ○ ○ ○ (인)
- 선 거 사 무 장 ○ ○ ○ (인)
- ○○선거연락소장 ○ ○ ○ (인)

○○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 귀중

주 : 1. 이 신고는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해당 정당의 대표자(정당선거사무소장)·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·선거연락소장이, 무소속후보자의 경우에는 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·선거연락소장이 할 수 있습니다.

2. 하나의 구·시·군위원회에 2개소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개표소별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(예 : 제1개표소 개표참관인신고서).

3. 국회의원선거에서 구·시·군위원회가 하나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마다 6인의 개표참관인을 선정·신고할 수 있습니다.

4. 교체신고시에는 "비고"란에 이미 신고된 자 "○○○과 교체"라 표시하여야 합니다.

[별지 제55호서식의(나)] (규칙 제102조제3항 관련) <개정 2015.8.13.>

개 표 참 관 인 승 낙 서

1. 성　　명
2. 생년월일(성별)
3. 주　　소
4. 직　　업

위 본인은 ○○선거의 개표참관인으로 선정됨을 승낙합니다.

년　　월　　일

승 낙 인　○　○　○　㊞

○○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　귀중